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발 간 사

한국스포츠, 희망의 순환을 시작하자!

올림픽헌장(IOC, *The Olympic Charter*)이 명시하고 있듯이, “스포츠의 실천은 인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정과 연대,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초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정신적, 신체적,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선수는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문제는 이제 스포츠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인권 의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들과 여성 선수들의 인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2008.11.19.) 이후 국회에서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 규정을 포함한 『학교체육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정부는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을 향한 주목할 만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멍니다. 최근까지도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력, 성폭력 사건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일부 학교들이 운동부 학생들을 제외한 채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큰 도덕적 비판에 직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년에도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해 구성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으로 확대 개편하여 스포츠 인권(*Sport and Human Rights*) 담론의 확산 및 현장성에 기초한 실천적 정책 대안 제시를 지속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위원회 배움터2에서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발족식

및 제1차 정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정책포럼에는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방열 전국가대표 농구감독, 강신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장(이상 공동대표)을 비롯하여 스포츠, 청소년, 여성계의 전문가들과 학부모, 지도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습니다. 포럼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활동 및 다양한 방식의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 스포츠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부모와 지도자들이 이 포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시민참여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차 포럼은 최근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 수립이 긴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핵심 내용과 실행전략**에 관한 논의를 거쳐, 특히 현재 미비점이 많은 **(학원)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임용 및 자격검증제도의 강화 방안**을 토론했었습니다. 포럼 위원들은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과제, 실효성있는 접근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는 학원스포츠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자격 강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발간하는 이 정책보고서는 제1차 정례포럼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을 당일 포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발표자들이 재차 수정, 보완한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최근 국회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현장의 이해와 안목을 넓히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던 한국 스포츠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합하여 **“인권에 기초한 선진 스포츠 문화”**를 일구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생산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포럼 참여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마흔다섯 분의 포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 끝까지 원고를 갈무리 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3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경 환**

❖ 목 차 ❖

발간사 안 경 환 (국가인권위원장)

제1부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실행 방안 / 1

1.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제안 3
국가인권위원회
2. 스포츠 인권교육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방안 21
신 순 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
3.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현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31
정 준 영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제2부 학원스포츠 지도자 임용 및 자격 강화 방안 / 45

4. 체육지도자의 길: 이상한 나라의 ALICE 47
류 태 호 (고려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5. 현장에서 바라본 학원스포츠 지도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 75
이 병 호 (서울체고 교사)

참고자료 / 89

1. 『학교체육법』 제정안 (국회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 23.) 91
2.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계획 및 명단 104



제1부 :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실행 방안

1.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2. 스포츠 인권교육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신 순 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3.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현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정 준 영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제안

국가인권위원회

1부. 한국 스포츠, 희망의 순환을 시작하자!

1. 2008.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과 사회적 반향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계기로 국내 스포츠 분야의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인권 현안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7년에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거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실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16개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정책권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및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2008년 한 방송사의 기획보도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 실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교육, 조사, 협력 활동을 유기적으로 통합, 기획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전국 중·고교 남녀 학생운동선수 1,139명을 대상으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상황의 종합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을 제시하

1) 이 장은 2007년 12월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연장에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집약한 정책제안서이며, 지난 2월 24일 1차 포럼에서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접 기초발제를 한 뒤 포럼 위원들의 토론 및 의견 수렴을 거친 내용임.

여 큰 사회적 반향이 있었음.

※ 중·고교 학생선수 78.8% 폭력 피해, 63.8% 성희롱, 성추행 등 피해 경험

-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부모·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과의 진솔한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음.
-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사례 제보 접수를 시작하여 약 20여건의 피해 사례를 상담했고, 몇몇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음.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약을 맺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였음. 또한, 스포츠, 청소년, 여성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포럼과 공동으로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였음.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긴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 언론과 시민사회, 현장 관계자들 또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최근 스포츠 강국을 자처해온 우리나라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는 긍정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2.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한국 스포츠의 현실

그러나 인권이 존중되는 스포츠 문화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 2008년 12월 23일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 김모씨(28세)가 전지훈련을 나선 인천공항

출국장과 훈련지 홍콩의 한 호텔방에서 이모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KBS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한체육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가해자에 대해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으나 해당 코치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맞고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징계처분 무효 청구 소송은 1심 재판에서 기각되었고, 폭행 관련 쌍방 고소건은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 코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한펜싱협회는 사건 직후 현지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대한체육회의 자격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Y군청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 2008년 12월 16일 언론 보도된 내용으로, 인천 지역 한 중학교 태권도부 여학생(현재 고1)을 최근 3년간 이십여 차례 상습 성폭행한 코치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청소년 쉼터를 통해 인천 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으며, 그 전까지 가정과 학교, 교육청에서 전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와 별도로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 및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대책 방안을 협의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향후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조치 등을 중점 논의하였고, 3월 18일 인천지역 운동부지도자 280명과 운동부지도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 2009년 1월 15일 H대학 농구부 감독의 선수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지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애초 중징계가 예상되었으나 대학농구연맹은 1년 자격정지 처분만을 내렸고, 이후 2차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파문이 일어 결국 해당 감독은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맹과 대학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 2009년 2월 2일 한 인터넷 매체는 야구전문기자의 블로그 기사를 통해 한 초등학교 야구부가 교장의 독단으로 해체 위기에 있다며 한국아마야구의 몰락 위기를 진단하고 해당 야구부의 재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당 야구부는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학부모가 제보를 접수한 곳으로, 아동성폭력 전력이 있는 감독의 부임이 우려되므로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당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보였다. 위원회의 확인 결과, 해당 감독은 5년 전 아동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야구부에 감독 부임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장은 교육적 판단을 통해 야구부의 해체를 검토하였고, 제보를 제기한 학부모도 더 이상의 조치를 원치 않아 위원회 조사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 학원스포츠 현장 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증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하였고, 이후 위원회는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같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양태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 대하여는 언론의 조명과 형사 처벌 등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다수의 사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은폐되고 왜곡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차 이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현장의 인식 상황, △체계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은폐, 축소, 왜곡하는데 급급한 일부 협회와 연맹, 학교,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문제점, △피해자에 대한 일차적 보호 및 지원 체계의 미비점, △관련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가해자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등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요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스포츠 분야의 폭력, 성폭력이 계속 재발하게 되는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중고교, 대학은 물론이고 성인 스포츠와 국가대표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양태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 상황이 수십년째 누적해서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홀로 감당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 운동을 포기하는 상황에도 처한다. 위기를 견뎌내고 운동부 생활을 계속해도 폭력 문화의 학습 효과로 인해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평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선수생활 말고는 다른 삶의 전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문제제기조차 하기 어렵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엘리트 선수 혹은 스포츠 스타 선수로 성공한 뒤에도 대중적 기대에 걸맞는 사회적 리더로 성장하는 데에는 또 다른 장벽이 놓여있다.

이것이 과연 월드컵 4강, 베이징올림픽 7위를 자랑하는 스포츠 강국, 한국 스포츠의 위상에 걸맞는 내적 모습일까? 여기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다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젓고 있다.

3. 왜 변화가 지체되고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왜 수 년,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문제들이 재발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사회 전반 분야가 빠르게 민주화, 합리화되어 왔고, 심지어 군대도 최근 몇 년간 사병 구타 근절 등 획기적인 인권 신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왜 많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스포츠 분야는 아직 취약한 인권 분야로 남아있는가?

여러 분석과 답변이 가능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진다. 1970년대의 남북간 극한 대립적 체제경쟁 속에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 성적만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이 제도화되었고, 이러한 국가적 목적과 성과를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방식의 체육문화가 정착되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크게 변화했어도 여전히 지배적인 정책, 제도, 문화, 관행으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생조차 과도한 전국 단위 경쟁 시스템에 노출되는 전국(소년)체전, △학업성취

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대회 입상 성적만을 기준으로 상급학교 입학이 가능한 체육특기자제도, △교육청, 체육회, 학교 간 과잉 경쟁을 유도하는 왜곡된 인센티브 시스템, △체육교사와 일부 인기종목 지도자를 제외한 다수 현장 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열악한 신분과 처우조건, △학부모들의 과도한 후원에 의존하는 학교운동부의 왜곡된 재정 구조,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들이 일반 사회, 가정, 학교 생활과 절연한 채 1년 내내 생활하는 합숙소 등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운동부의 관행과 문화, △언제라도 중도탈락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절대 다수의 운동선수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 결여. 이같은 요소들이 현 스포츠 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특징들이다.

오랜 세월동안 누적돼온 제도적 기제와 관행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체육계는 체육계대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아동,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인간적 발달 과업의 성취는 여전히 정책의 하위 순위를 맴돌고 있다.

4. 국가 차원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제도적 공간과 일상의 현장 공간에서 이미 변화의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알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규정한 「학교체육법」 제정안이 발의(안민석 의원 대표발의)되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T/F 팀을 구성하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방송 및 신문사들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폭력, 성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체육계의 관행과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청소년, 여성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스포츠 현장의 운동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육청 및 체육회 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과 제도, 관행을 유지해서는 사회 발전의 방향과 속도에 부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과제인 스포츠 선진국 진입도 요원하다는 데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내용, 이행 전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폭력, 성폭력과 같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가려는 노력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할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로 **‘인권에 기초한 선진국형 스포츠 정책과 문화의 확립’**이다. 엘리트 스포츠가 보여주는 뛰어난 성취와 긍정적 사회통합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인권에 기초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동과 여성 등 모든 선수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신의 삶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며, 직업적인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은 다른 분야 종사자 일반의 평균적 삶의 질을 누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누리는 방향으로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의 분명한 전환이 요구된다.

이것은 스포츠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국가 스포츠 정책으로 채택해온 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해할 진정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모습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기본적 저변 확보 차원에서도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다.

5. 정부의 학생선수 인권 개선 대책안 검토

최근 교과부는 2009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다. 위 계획안의 주요 정책 과제 10가지 중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7.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학습권 보장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 초, 중학교 합숙훈련 전면금지(도서벽지의 기숙사 형태 운영은 허용)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를 연중 3회까지로 제한
-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별 주말리그제 전환 등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수업결손 보충 등 학력증진 방안 강구
-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

○ 폭력, 성폭력 예방 근절

-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영구 제명
- 선수보호위원회(대한체육회) 재구성 및 역할 강화
- 선수인권보호센터 신설 및 홈페이지 구축
-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 상담실 운영
- 선수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학생선수보호규정 준수 철저
-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는 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성

교과부는 이같은 지침 하달과 별도로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T/F팀”(문체부, 대한체육회 공동 운영)을 금년 3월까지 운영하여 체육특기자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위 T/F팀의 최종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위 업무 계획안을 근거로 몇 가지 검토 의견을 제언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해 보인다.

우선, 큰 틀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세부 추진 과제들도 예정대로 추진되어 학원스포츠 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위 계획안의 과제들 중 아직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하나의 완결성있는 실행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령, ‘최저학력제 도입’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고,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의 계획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차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폭력, 성폭력 예방 근절 방안> 중 상당수(선수보호위원회, 선수인권보호센터, 찾아가는 상담실, 선수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등)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등 업무 추진 체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임시방편적 대응과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했던

기존의 업무 관행을 극복하고 내실있는 정책 추진이 구현될지 의문도 제기된다. 또 ‘학생선수보호규정 준수 철저’ 수준의 지침으로 과연 기존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한계를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학교까지 합숙 훈련을 전면 금지한 것, 학교축구 활성화 방안 등은 바람직하지만, 향후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운영중인 T/F팀을 통해 더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이 모색되기를 요망하면서 이번 정책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정책화할 것을 기대한다.

2부.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방향 및 과제

1. 정책 접근 관점 및 전략

1)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인권 관점의 접근(Rights Based Approach)

- 학생선수는 운동선수 이전에 학생이자 인간이며, 자아정체성 및 인격 형성에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들에게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 ‘신체적, 성적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강력히 천명해야 함.
-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학습권 및 교육받을 권리, 문화향유권 등이 학생선수 및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해야 함.

2) 학습권 침해와 폭력, 성폭력 문제의 포괄적 접근

- 현재의 (학원)스포츠 환경에서 학습권 침해와 폭력, 성폭력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접근 전략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학습권 실현을 위한 단계적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등의 정책과 함께, 시급한 대책을 요하는 폭력, 성폭력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체육계의 정책 의지가 중요함.

3) 종합적 인권대책의 수립 및 현장 참여 확대

- 엘리트 위주 스포츠 정책 및 제도의 인권친화적 전환,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현장의 인식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함.
-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현장의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모범적 사례 등을 발굴하여 확산해가는 포지티브 전략도 병행해야 함.

4) 국가 차원의 스포츠 인권 정책 수립 및 이행

- 중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스포츠 인권 정책(*National Strategy for Sport and Human Rights*) 수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일관된 정책 집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과의 신뢰 형성 및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영국, 호주, EU 등 해외 선진국의 국가 스포츠 전략을 참고

- 향후 5년 내에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그 구체적 실행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국가보고서 및 국제심포지움 등을 통해 변화된 한국의 스포츠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2011년경 대규모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해외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국내 스포츠 인권 향상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고
 - 2012년경 국가 스포츠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체육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전략을 수립

2. 주요 정책 과제

1)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선

- 소수 엘리트 선수의 육성 및 대회 성적 향상에만 집중해온 현 스포츠 정책 및 제도를 인권에 기초한 선진국형 모델로 전환하여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스포츠의 사회적 위상을 능동적으로 재정립
 - 학부모, 지도자, 교사, 체육단체 등 현장 관계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과 역량강화(임파워먼트) 정책 시행
- 2007년 11월 국회의 “학원스포츠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습권 보호 정책 실시
 - 내실있는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 도입 및 체계적 보충학습 시스템 마련(법제적 뒷받침), 전국(소년)체전 개최 방식 개선,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등
 - 최근 국회의 『학교체육법』 제정 움직임을 좋은 계기로 삼아 선진형 스포츠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 강구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소년)체전 등 학원스포츠 정책의 인권친화적 개선 방안을 집중 조명하여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임.

2)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국제기준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
 - ☞ 영국의 *Standards for safeguarding and protecting children in sport* 등 참고 :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 영국, 호주 등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보고서 발간 및 포럼 개최 등을 계획 중
-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학원스포츠 모든 주체들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록 하며,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활용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시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언론, 현장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의 형태로 제정하여 이행력을 확보
 - * 『학교체육법』 제정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연내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사업 추진

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의 확대 및 제도화

- 2008년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운동선수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제도화
 - 학원스포츠 지도자 및 학생선수는 매년 일정 횟수 이상 의무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학교장 및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학교체육법」 등)
 - 2008년 마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스포츠와 인권’에 관한 충실한 이해를 돕는 안내서 등 교재 개발을 병행
 - 대한체육회와 체육과학연구원, 경기연맹단체들도 특화된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협회 관계자 및 체육행정 종사자, 종목별 등록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연수 또는 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 지도자, 정책관계자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현장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잠신중 야구부, 공릉중 축구부와 같은 현장 모범사례를 지속 발굴, 전파
 - ※ 2009년 국가인권위는 전국 순회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 및 종목을 중심으로 모범적 인권교육 모델을 발굴하여 다른 지역 및 종목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

4)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스포츠 인권 지원센터”(가칭)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대다수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공정한 조사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고, 조사, 위기 상담, 지속 상담, 진로 지도 및 중재, 법적·의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예산 및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중앙지원센터를 적정 규모로 개설 운영하되, 16개 시도는 기존의 청소년 관련 지원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 * 기존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사례를 참고

- 스포츠 인권 전문 웹사이트 구축

- 영국의 <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호주의 <Play by the Rules>의 경우처럼 스포츠 인권 전문사이트를 구축하여 스포츠 인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권의식을 높이는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

 - ☞ www.childprotectioninsport.org.uk, www.playbytherules.net.au 참조

5) 스포츠 지도자 임용 및 자격검증제도 강화

- 스포츠 지도자는 현장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도하는 1차적 책임자로서 적절한 권한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이를 위해 스포츠 지도자의 임용 및 자격 취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장 관계자들의 인맥 등에 의해 충원되는 비합리적 임용 방식을 탈피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공개적 선발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가 임용되지 않도록 엄밀한 자격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체육단체 및 스포츠 지도자 모임이 자발적으로 지도자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함.

- 자격검증 강화와 함께 현장의 지도자가 모든 운동선수의 인권을 존중하고 역량 발전을 촉진하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함.

-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단기간에 전국(소년)체전 등의 입상 실적이 없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 학원스포츠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경감
- 신규 임용자 연수교육 및 기존 지도자들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도자들이 스포츠 과학과 리더십에 기초한 훈련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

3.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4대 접근 전략과 5대 주요과제는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간추린 것이며, 여기에는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실효성있는 정책 및 법제 개선이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각 분야 정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 협의를 요청드리며,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보론1. 국회 「학교체육법」 제정안 검토 의견

최근 국회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 제정안이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진흥하는 한편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중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의 연수 및 자질 향상
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저학력 기준 설정·운영

제5조(학교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제10조(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 이수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교운동경기부 내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명랑한 학교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식대회에 출전을 허락하여서는 안된다.

④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 및 실시 시기와 제4항에 따른 학기중 합숙훈련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예산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인격과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및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안은 국가 주도의 소수 엘리트 선수 육성에만 몰두하여 일반 학생들의 보편적 스포츠 참여권을 박탈하고, 대다수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했던 **기존 학원스포츠**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국내 첫 입법조치로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최저학업기준인정제도의 법제화를 기하고 있다는 점,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임용 및 자격기준, 인권침해 시의 제재 조치,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학생선수의 학기중 상시 합숙 훈련 금지 조치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동 법안은 제정안의 골자 위주로 작성되어 다소 소략한 느낌이 없지 않는데, 몇 가지 검토 의견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우선 **법안의 명칭과 목적, 이념 등과 관련하여 인권 관점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학생의 보편적 스포츠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생선수가 갖는 인권의 항목과 범주(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교육권 및 학습권, 신체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진로선택권, 인권침해시 적절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원스포츠에 참여하는 지도자와 학부모가 갖는 권한과 책임의 범주도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학원스포츠 현장의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발생시 현장 관계자 및 감독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명확한 처리절차 등 핵심적인 조치들이 규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학교장 및 교육감의 의무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의 내용과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절차, 스포츠 인권침해 전담 기구의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원스포츠영역의 경우에는 교육감 산하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법적 기구로 정식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 등과의 관계 설정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포츠 인권교육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신 순 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현재 스포츠 인권교육과 피해자 지원 체계와 관련된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 이외에는 별반 제시할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안민석의원의 “학교체육법” 제정 발의안조차도 ‘예방교육’에 대해서나 피해자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교원연수나 직무연수를 통해 예방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법안내용에 담겨있는 듯 하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어 이 법안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당장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학생선수 당사자 및 체육지도자, 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요원해 보인다.

본 토론자는 첫째, 스포츠 인권교육이 선수와 교사, 스포츠 지도자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법적 기반을 어디에 두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교과부가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지난 5년의 경험에 비추어 말하고자 한다.

둘째, 피해자 학생선수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한 뒤, 개별적인 임상사례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학교폭력SOS지원단”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조적 틀을 제안하려 한다.

1. 스포츠 인권교육

- 스포츠 인권교육이 선수와 교사, 스포츠 지도자에게 왜 필요한가?

학교폭력의 경우도 폭력의 가해자 70% 이상이 과거 피해자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러한 경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만이 사전에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원 스포츠의 경우 학생 10명중 8명이 맞아보았고, 지도자 10명중 6명이 때려 보았다는 통계가 나온다. 폭력은 선수생명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력의 후유증이 지속해서 남아있다. 이를 통해볼 때 폭력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ndura의 학습이론(1973)과 Bandura & Walters(1963)의 모방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폭력을 당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이론을 학교폭력이나 스포츠 폭력에 적용시키면 ‘모델링’과 ‘자기강화’의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김은경(1999)의 연구에서도 과거 성장기에 가정 및 학교에서 체벌을 많이 겪은 교사들일수록 현재 체벌을 행사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폭력적 문화 경험을 지닌 현재의 스포츠 지도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다.

▪ 인권위의 2008년 스포츠 인권 시범교육의 경험에서 얻은 것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2008년 “스포츠 인권교육”의 목적은 학생선수들의 권리 침해 개선 및 폭력, 성폭력의 예방 등 정신적, 신체적, 성적 자율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토론자는 전년도 인권위에서 실시한 “시범적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년도 인권위의 스포츠 인권교육에 대해서 잠깐 짚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본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학습권과 폭력, 성폭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교육으로, 각각의 프로그램은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발생배경, 사례 및 실태, 대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 내용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였고, 상황별, 관계별에 따른 민감성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선수들의 부모 교육 이후 선수들의 폭력 피해에 대한 문의가 인권위에 쇄도하였으며, 이중 두 건은 청예단에서 의뢰받아 본인을 비롯한 전문상담가들이 상담 및 치유 활동을 전개하였다. 피해자들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상담을 통하여 지금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선수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비록 두 건의 임상 상담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우선 선수들의 고통을 호소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점이다.

학생선수들은 아직도 학생신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교과부에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학생들을 구제할 상담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경우 체육부문이라는 특성상 대한체육회와 같은 체육 전문조직이 개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이러한 조직을 이용하여 피해 선수학생들을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였다.

인권위의 순회교육 이후 교육에 참가한 전문지도자(강사)들은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개념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학교 스포츠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생선수 및 스포츠지도자 또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근거를 만들고, 예산과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더불어 학생선수 부모들과의 교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적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학생선수 인권 향상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인권침해 피해자 학부모 연대”와 같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조직도 필요할 것이다.

▪ 필요한 법적 규정과 스포츠인권을 위한 정책의 모색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체육법’의 내용에 일년에 일정 횟수 이상 정기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학교폭력과 같이 한 학기당 1회 이상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일년에 1회 이상 체육교사와 스포츠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수 보호위원회”의 역할규정을 법적기구로 확대하여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및 분쟁조정과 징계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학생지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는 선수를 운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와 지역 단위,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학생선수들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구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16개 시·도에 피해선수 지원 상담실을 설치하여 각종 피해 민원(고충상담,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운영하는 재원은 “학교체육법”에서 근거하는 재원을 이용하며 관리의 책임은 시·도 교육청에서 맡는다. 운영은 전문 NGO가 개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질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담보한 “학교체육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2.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 유사한 분야 구축사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지난 1996년부터 학교폭력상담과 예방활동에 주력해온 NGO이며 자신의 외아들을 학교폭력으로 잃은 피해자 아버지가 만든 단체이다. 우리는 이 단체를 운영하며 학교폭력과 스포츠 인권침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 때문에 알릴 수 없다.

둘째, 보호를 받아야할 학생 신분인데 교과부나 관련 부처의 조치가 미약하다.

셋째, 전문적인 상담인력에게 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

넷째, 폭력의 후유증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성인이 된 다음에도 지속된다.

다섯째, 개인에 대한 폭력임과 동시에 후진적 학교구조에 의한 폭력이다.

여섯째, 폭력의 주 가해자가 동료학생 혹은 지도하는 교사, 코치나 감독이다.

일곱째, 폭력은 주로 학교 혹은 운동연습을 하는 곳,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일어난다.

학교폭력과 학교 스포츠 폭력은 이상과 같이 학교 내 구조적 모순에서 출발하며, 스포츠 폭력은 이와 더불어 체육이라는 특성과 함께 자행되기도 한다.

청예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여 2004년 관련 법률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7년부터 교과부와 학

교폭력 MOU 체결 이후 16개 시·도에서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원단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의 요청으로 피, 가해자 중재를 중심으로 화해와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10,000여건 이상의 폭력 상담을 하였으며 중재상담 또한 3-40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및 치유과정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 스포츠피해자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구상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피해지원 체계는 규모와 질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째, 가난한 선수들에 대한 치료비의 지불이다. 학교폭력관련법은 이 같은 학생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나 지역교육청이 우선 치료비를 내고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제도의 정착이 잘 안되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선수의 경우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하면 될 것이다.

둘째, 피해자상담 및 지원센터의 구축은 비용과 인원이 엄청나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미 전국적으로 연계망이 있는 학교폭력SOS지원단의 망이나 성폭력 관련 망을 활용하여 추가로 스포츠인권 상담자를 시도별 1명 이상 배치한다면 저비용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16개 시·도 체육회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유사 망(NET-WORK)들은 전문적 법적 상담과 중재기능, 상담기능이 가능하며 치료에 대한 부분은 지역 교육청과 경찰청을 통한 ONE-STOP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지역의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중복적 기능을 활용하여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피해선수 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통합적 기능으로서 정보 지원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스포츠 인권 통합 지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지역이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본 정보는 물론 선수생활에 따른 제반 인권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해 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선수와 가족들이 법적 지원이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

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포츠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안 역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학교체육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3. 결론

1) 관련 법규에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규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 관련 법규 내에 선수 학부모, 체육교사, 코치, 감독 등은 일년에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교정상담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지원체계는 치료비 위주의 지원체계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원활한 정상적 활동을 위한 임상지원체계로 구분되어 구축되어야 한다.

2) 민간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된다.

- 정부는 주로 치료비 위주의 재원을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조직을 개선하고, 임상상담 부분에서 원활한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스포츠 폭력의 피해(폭력, 성폭력)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전문적 상담체계를 갖춘 민간단체와 MOU 등을 맺어 자원을 연계한다. 이러한 연계 체계는 이후 “학교체육법”을 근간으로 법적 지위와 재정을 수반한 스포츠폭력 상담시스템에 귀속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체육 관련자들의 스포츠 인권 상담자 및 예방교육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 중,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 중 전문상담원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스포츠 폭력 예방 전문강사과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과정은 교과부와 대한체육회, 인권위 세 주체가 모여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전문강사들은 16개 시·도의 체육 관련자 및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폭력 예방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물론 현재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전문인력 확보는 순조롭게 확보될 것이라 예상된다.

4) 스포츠 폭력에 관한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 이러한 WEB 서비스는 관련 법률 및 행정 지원, 학생선수에 대한 스포츠 진로 상담,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교육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아야 하며, 특히 익명성이 요구되는 인터넷 상담채널을 주요 콘텐츠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현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정 준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현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정 준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학교 스포츠를 둘러싼 인권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여러 단체들의 노력과 더불어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높아진 덕분이다. 군대와 학교에서의 차별이 지니고 있는 비인간적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어 여성과 장애인, 동성애자 등 다양한 소수집단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제까지 별다른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학교 체육에서의 인권 상황에도 여론의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지니고 있던 중요성과 10만여 명에 달하는 각급 학교 운동선수들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상황이 이제야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스포츠와 관련된 인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부재를 초래했던 구조적 환경이 대부분 온존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 체육계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성원들의 인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학교 스포츠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현장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스포츠 인권 관련 현장 주체들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과 연관되어 있는 현장 주체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류태호 교수의 논의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류태호 교수는 학교 스포츠 관련 주체들을 공급

자와 수요자, 관리자라는 범주로 나눠 살펴본다. 여기서 공급자는 코치와 감독, 연맹 등 스포츠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행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수요자는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과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학교와 교육부, 문광부 등 학교 스포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그 실행 현황을 관리, 감독하는 행위자를 일컫는 것이다.

류태호 교수의 분류가 학교 스포츠에 개입하는 현장 주체들의 종류와 범주를 잘 구분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다소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행위자만 거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덧붙여 두 가지 행위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행위자는 국가이다. 학교 체육과 관련하여 국가는 체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류태호 교수가 관리자로 분류해 놓은 학교와 교육부, 문광부 등은 실상 이처럼 국가가 마련해 놓은 틀에 따라 체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급자인 코치와 감독, 연맹 등도 국가가 마련해 놓은 틀 안에서 그 정책 방향에 일치하도록 스포츠를 공급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이다. 국가가 위로부터 학교 체육, 나아가 체육 일반에 관련된 틀을 수립하고 그 틀에 맞춰 학교 체육 현장을 조직해 나가는 존재라면 시민사회는 아래로부터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견제,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좀 더 직접적인 정책의 수혜자로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간접적인 수혜자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일반 시민을 포괄하는데 이들의 활동이 조직화될 때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가 출현하게 된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학교 체육 또는 좀 더 나아가 체육계 전반을 돌이켜보면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위로부터의 방향과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는 아래로부터의 방향 중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며 체육 현장의 기본 모습을 구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초기 체육 현장의 틀이 갖춰지는 시기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본격 성립되는 시기였고 체제경쟁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스포츠가 각광을 받았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성숙되지 못 해 시민사회가 매우 취약했던 반면 독재체제 하에서

국가는 과잉성장되어 있었다는 점도 위로부터의 방향이 지배적이 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 결과 초기부터 우리 스포츠는 체제 경쟁의 도구이자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국가는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독재정권의 취약한 정당성 기반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엘리트 스포츠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섰다.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에서 각급 학교별 대회를 마련하고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을 독려한 것이 이처럼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성과지향적 스포츠 정책을 펼친 것의 직접적 결과이다. 여기에 1960년 대말 이후에는 스포츠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언론사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각종 대회가 창설됨으로써 경쟁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스포츠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국가가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정책이 활발히 펼쳐졌던 반면 일반 시민의 자발적 욕구는 철저히 억압되었다. 각급 학교에서의 공식 체육 교육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도수체조와 기타 기초 체력 단련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으며 이 타율적인 교과과정을 강제하기 위해 1969년부터 상급 학교 입시에서 체력장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통제지향적인 체육 교육의 틀이 학생들에게 강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과지향적인 체육의 틀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과지향적인 틀이 자리잡아 갔다. 소수의 엘리트 선수를 선별하여 운동부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장시간의 집단훈련을 강요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학교 운동부는 학교의 다른 부문과 분리되어 고립된 섬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관리자들도 역시 최종 결과로서의 성적에만 관심을 둘 뿐 현장에 대한 감독 기능을 포기한 채 현장의 공급자인 코치와 감독 등에게 대부분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교육생으로서 학생 운동선수들의 위치는 망각되고 학생 운동선수를 일종의 도구로 보는 관점이 우리 사회 체육 문화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즉 국가 정책의 틀 속에서 승리지상주의에 기반한 비인간적 체육 교육의 관행이 축적되었으며 이런 관행을 개선할 계기도 좀처럼 마련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이 속에서 학교 체육의 공급자인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들은 이 비인간적 관행의 현장 집행자이자 스스로 그 피해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성과지향적인 틀이 학생 운동선

수는 물론 이들 지도자들마저도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도구로서 취급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학교 체육 지도자를 괴롭히고 있는 직업 안정성의 부재와 낮은 처우 등이 이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우리 사회 학교 스포츠의 현실은 비정규직 지도자의 비교육적 선수 지도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학교 체육부의 성과가 그를 지도하는 개별 지도자의 성과 뿐 아니라 관리자들과의 성과로까지 인정되면서 관리자 스스로 학교 체육 현장에서의 이처럼 반인권적 스포츠 문화를 암묵적으로 부추기는 현상까지 가세하자 학교 스포츠 현장의 파행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독재 체제의 권위주의적인 틀 속에서 전반적인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억제되었던 가운데 학교 스포츠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 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체육 현장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의 사례가 드러나더라도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기보다 문제를 덮고 은폐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대응은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적 요소 때문에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의제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과 아울러 학교 체육이 이들 수요자에게 나름대로의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엘리트 스포츠의 틀 속에서 운동선수로 발탁된 학생들은 일정 정도의 밝은 미래를 담보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대입특기자 제도의 실시라든지 국제대회 입상자들에게 주어진 체육연금의 혜택,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야구와 축구를 필두로 한 프로화의 진척과 함께 열린 프로선수로의 길 등은 학교 체육 현장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내할 충분한 당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역시 앞에서 얘기한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을 오히려 부추기기도 하였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도 우리 스포츠계를 지배하고 있던 경쟁논리 속에 매몰되어 연대를 통한 문화의 변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스포츠 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2. 학교 체육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근자에 들어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학교 스

포츠계의 비인간적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체육계에서도 다양한 시민운동 조직이 발전하여 우리 체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학술적인 논의를 펼치는 한편 우리 학교 체육의 비인간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에 적절히 개입하여 문제해결은 물론 스포츠 문화 자체의 변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어우러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도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촉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넓게는 스포츠계 내부, 좁게는 학교 스포츠 현장에서 변화를 유인하고 강제한 다른 요인들의 작용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스포츠계 내부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여가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스포츠계 종사자의 진로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화된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고 경제발전과 함께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가활동 만족도도 높은 참여형 여가활동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참여형 여가활동의 가장 대표적 활동 중 하나인 스포츠 산업의 규모 증대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이런 발전은 스포츠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2007년 여가백서에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현황을 분석한 것을 보면 체력단련 시설 22,222개소와 당구장 9,695개소, 볼링장 562개소, 골프장 197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37,558개소의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소가 있으며 종사인력은 총 112,2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들 시설 중 대다수는 아직 고도의 체육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 달한 곳이 아니지만 여가사회가 발전할수록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수와 여기에 종사할 체육 전문인력의 수요 역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이런 수치는 2008년 국내 프로축구 등록선수 523명과 프로야구 등록선수 477명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운동선수들의 사회진출 통로가 그만큼 넓어지고 다변화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새롭게 열린 이들 직업들이 전문 운동선수가 되는 것과는 다른 양식의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전문 운동선수의 길이 대부분 운동능

력 자체의 발전에만 치중하는 것과 달리 이들 직업을 택하려면 부문에 따라 체육 관련 여러 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은 물론 여타 학문에 대한 지식도 일정 부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영역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체육 분야와 관련하여 새롭게 열린 직업의 길이 전문 운동선수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을 완화시키는 한편으로 기존의 교육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스포츠 지도자들이 자주 토로하는 고충요인으로서 학교 운동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 스포츠의 오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청소년층의 의식은 급속히 바뀌어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지향적인 관행과 괴리를 빚게 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이른바 신세대라 불리우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는데 비교적 풍족한 성장과정을 경험하고 권위주의에 물들지 않은 이들 세대는 기존 체육교육의 관행에 잘 적응하지 못 해 소질이 있더라도 학교 운동선수의 길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운동부의 충원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학교 체육 지도자들은 기존 체육 교육의 관행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학교 체육, 특히 엘리트 체육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3. 인권 향상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위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는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기존 교육의 관행을 인권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지 일회성 캠페인이나 구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에 개입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 주체들 스스로의 노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각 주체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려면 두 가지 방향의 노력, 즉 위로부터의

노력과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이는 제도의 개선과 관행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왔던 민주화의 과정이나 인권의 향상과정을 돌이켜 보면 금방 드러나듯이 제도의 개선이 곧바로 의식이나 관행의 개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제도의 뒷받침없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제도를 운영해 가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만 바뀌어도 과거의 관행이 금방 되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효과의 문제에서도 두 방향의 노력이 병행되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학교 스포츠, 나아가 스포츠계 전반은 오랫동안 위로부터의 권위주의적 통제에 익숙해져 있어 변화를 시도할 때에도 위로부터의 적극적 움직임이 없다면 관행의 개선에 매우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위로부터의 개선 노력은 종적 구조의 일정 단계까지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 현장과 연결되는 하위 단계까지 효과를 발휘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때 아래로부터의 노력은 위로부터의 개선 시도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체제경쟁의 도구와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 스포츠를 보는 관점의 포기를 선언하고 다수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 하에서 학생 운동 선수들의 학습권과 평범한 다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물론 이런 원칙을 수립한다고 해서 스포츠에서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 체육의 틀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의 수립은 엘리트 선수 역시 운동 기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기반한 원칙을 천명하고 나면 학교 스포츠의 관리자들은 이 원칙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논

의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법과 같은 각종 법안 뿐 아니라 엘리트 체육으로 치우쳐 있는 자원배분의 몫을 변화시키는 것, 학교 체육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교 운동선수들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인권침해적 처우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각종 장치들, 즉 특기자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경쟁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회 참여 횟수의 제한, 대회 기간의 재배치, 연습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제도적 틀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역할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운동선수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과거의 관행에 젖어있는 현장 주체들에게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작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관리, 감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운동부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거나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내, 외부에 별도의 학교 체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체육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운동선수의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하여 코치와 감독, 연맹 등 공급자들은 대개 변화의 주체라기 보다 객체의 위치에 서기가 쉽다. 현재 빚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의 다수가 현장의 관리책임자인 이들의 관리 소홀이나 의도적인 방조로 인해 파생된 것이거나 나아가 이들이 직접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기만 한다면 실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변화 과정에서 공급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이들의 수동성은 무기력을 낳음으로써 학교 체육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변화의 노력에 대한 역풍을 불러 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어서이다. 따라서 이들이 변화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학교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 안정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을 펼쳐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 일차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후에야 교육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묻는 것도 좀 더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교육 관행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관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 이후 스포츠계 내외부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스포츠 과학에 대한 교육과 같은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 체육 지도자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면 자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스스로 걸러내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 체육 현장에서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직접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체육 지도자와 더불어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교육의 양대 주체로서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은 충분한 정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먼저 체육 전공자들의 진로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기존의 경쟁적 구도에 집착하지 않도록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학교 체육 운영위원회 등에 운동선수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학부모의 역할이 일차적이라고 하여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들과 관련해서는 먼저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 상담창구와 필요할 경우 치료창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인권 침해 사례가 생겼을 경우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학부모들의 교류를 가능케 해 주고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적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공론화시킬 시민단체의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이들 단체에 적극 참여할 때 시민단체가 전개할 노력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위로부터 조직

된 성격이 강해 일반 학부모들과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아울러 종적 위계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체육계의 현황을 염두에 둘 때 적어도 단기적인 면에서는 국가기관의 개입이 학부모들에게 공신력을 제공해 주어 참여를 유도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서이다.

4. 개선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

이제까지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부문에 개입하고 있는 각각의 현장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애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장애요인 중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 번째는 프로 스포츠의 발전에서 드러나는 스포츠 상업화의 강화 경향이다. 스포츠의 상업화는 수월성을 획득한 엘리트 운동선수에 대한 보상의 몫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보상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엘리트 체육이 국가적 목표를 위해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해 주고 개인의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상업화된 스포츠는 보상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강제를 가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종의 유혹 모델을 작동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반화될 때 프로화가 이루어진 주요 스포츠를 중심으로 성적이나 성과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학교 체육을 지배하고 있는 비인간적 상황의 개선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의 사례를 볼 때 스포츠 상업화의 물결은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학과 공부에서 일정 성적을 올리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대회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도입한다면 운동기량의 향상에만 몰두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대회 참여 횟수의 제한이나 훈련시

간의 제한 등의 방안도 일정 정도 성과에 대한 집착이 극대화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난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유혹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파생된다. 특히 민주화가 아직 완결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다소 위기를 겪을 때 스포츠에서의 성공을 통해 그를 만회하고자 하는 욕구가 언제든지 솟아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유혹이 국제 스포츠에서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와 결합될 때 학교 스포츠에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강력한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새로운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도기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다소나마 경기력의 저하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엘리트 체육 중심의 자원배분을 통해 엘리트 체육의 성패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엘리트 체육계가 이런 반발의 첨병에 설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용 자체가 정치적인 손해를 초래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체육에서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주체들, 그 중에서 수혜자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 체육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이 전면에 나설 때 우리 학교 체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여론의 결집도 좀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체육 현장에서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2부 : 학원스포츠 지도자 임용 및 자격 강화 방안

4. 체육지도자의 길: 이상한 나라의 ALICE

류 태 호 (고려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5. 현장에서 바라본 학원스포츠 지도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

이 병 호 (서울체고 교사,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체육지도자의 길 : 이상한 나라의 ALICE

류 태 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체육지도자의 길 : 이상한 나라의 ALICE

류 태 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은 전문체육을 기반으로 올림픽과 각종 세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우수한 성적으로 바탕으로 국가이미지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주도의 소수 엘리트 선수만을 육성하는 “압축·성장”의 스포츠 모델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성장에서 엘리트 체육이 결실을 맺는 전인적 성장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왜곡된 구조는 소수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물질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그들의 운동기량만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나머지 잠재된 인적자원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선발된 학생선수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인적 성장과 운동이외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합숙훈련 및 수업 결손 등으로 인한 행복추구권과 학습권 등 인권을 박탈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체육은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적인 교육활동이자 문화 활동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적인 교육 및 문화 활동으로서 체육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선진체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운동부의 정상화가 국가주도의 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동부에 대한 문제의 정점에 ‘지도자’가 있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외부자의 관점 혹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의 측면이 부각된다. 하지만 내부자의 관점으로 보면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엘리트 체육의 산파역할을 강요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의 입장에 서있기도 하다. 다음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 코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와 면담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는 잘나가는 운동선수였다. 최고인 줄 알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할 때만해도 모든 것이 잘 될 줄만 알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를 빛냈다고 표창장도 받고 교장과 악수도 했다. 하지만 나는 담임도 모르고 일반학생들도 모른다. 내가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할 때는 부모님의 금전적 부담이 컸다. 그렇게 운동만하면 학위도 받고 금전적 보상도 받을 줄 알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신세다. 그 흔한 4대 보험도 나에게서는 그림의 떡이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단기간에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기계 같은 존재다.

결혼을 했지만 휴일에는 시합해야 하고, 방학에는 전지훈련을 가야 한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다른 학교에서 폭력사건이라도 터지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훈련방법을 시도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담아내기에는 단기간에 성적을 요구한다. 어릴 때부터 해 온 것은 운동밖에 없고, 다른 것을 배울 기회는 내겐 없었다.

사실 나도 피해자다.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동부 코치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면서 지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외부자적 시각만으로는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힘들다. 체육지도자가 현재의 운동부 구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선 제 3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체육지도자의 문제를 지도자 ‘개인’의 차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구조’의 문제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문제를 운동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의 문제를 넘어 ‘인권’, ‘교육’, ‘지도자’의 통합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체육지도자가 대한민국 체육의 구조 속에서 위치한 개인이며, 이들이 관여하는 운동부 활동은 운동을 잘 가르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운동을 배우는 학생의 기본권인 인권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운동부의 생활과 문화를 “고립된 섬문화”라고 표현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과 단절된 다른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말이다. 이에 착안하여 본 글에서는

운동부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ALICE"라는 용어로 정리하였다.

첫째, Abnormality(비정상) : 체육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증의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Lethargy(무기력) : 체육지도자의 불안한 신분과 직업적 안정성의 결여된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Insanity(몰상식) : 학교운동부, 전문체육 분야에서 끊임없이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Complex(콤플렉스) : 직업적 안정성의 결여와 경기성적을 강요받지만, 구조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지도자의 현실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Enigma(수수께끼) : 지금까지 제시한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 지도자의 불안한 신분, 폭력, 콤플렉스에 대한 문제를 국가차원과 학교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운동부 지도자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필자의 고민과 반성의 관점에서 구성해 보았다. 이것은 체육지도자의 '생활', '제도' 그리고 '전문성'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체육지도자의 임용과 자격검증에 대한 논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초점을 두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육지도자가 안고 있는 현실과 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I.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이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생애주기와 학교체육의 이해,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용어를 제시하였다.

☞ ①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생애주기, ②학교체육, 전문체육, 사회체육의 정의, ③학교체육의 영역 및 지도자의 정의

□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생애 주기(류태호, 2004)

-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생활
 - 학교운동부만을 통한 성장만을 강요하고 단선적이고, 이분법적인 생활
 - 일반학생과 분리된 ‘섬’문화를 경험하게 됨
 - 중도 탈락의 경우 다른 진로에 대한 선택권의 부재로 사회적 부적응 유발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생활
 - 1년 단위의 재계약에 대한 불안한 신분
 - 경기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연합적 경쟁 구조
 - 학습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의한 가해자로 낙인

· 운동이냐? 공부냐? 병행은 없고 한 길만 있다 →이분법적 구조 · 오직 학교운동부를 통한 성장을 강요하는 구조 →단 선 적 구조			
국가적 지원	학생선수	중도포기·탈락 (부상, 문화갈등, 제도적 필터링)	국가적 지원부재
	· 훈련중심의 학교생활 : 학습권의 침해	· 학습 진입의 어려움	
	· 주변인으로서 학교생활	· 학교생활의 주변인	
	· 제로섬(Zero-sum)문화 :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	· 학습된 무기력	
	· 전체주의 문화 : 압축생활과 휴가	· 소외문화 : 운동부, 가족, 동료, 학교	
· 섬 문화 : 학교인의 다른 학교	· 관계적 섬 문화 : 또 다른 분리		
사회적 진출의 한계	직업선수·지도자	사회적 부적응	재교육부재
	· 진학, 직업의 희소성 - 새로운 경쟁의 시작 · 학생선수 생활의 연장선 - 반복되는 운동선수문화 · 또 다른 경쟁 - 스타선수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 연합적 경쟁 구조 · 불안정한 생활	· 선택권의 부재 · 전문성 결핍으로 인한 사회진출의 어려움 · 사회부적응 - 문화적 갈등 - 지적 결핍 - 정서적 이질감 · 사회적 고립감, 좌절 · 명성에 대한 그리움	

□ 학교체육(정과체육), 전문체육(엘리트체육), 사회체육(생활체육)의 정의
(체육백서, 2004)

- 학교체육에서 체육활동은 교육적 활동으로 전개
 - 체육 발전 모델에서 나무의 ‘뿌리’에 비유
- 생활체육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전개
 - 체육 발전 모델에서 나무의 ‘기둥’과 ‘줄기’에 비유
- 전문체육은 운동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으로 아마투어 선수들의 ‘엘리트 스포츠’와 ‘프로스포츠’가 이에 해당
 - 체육 발전 모델에서 나무의 ‘열매’에 비유

	학교체육	생활체육(사회체육)	전문체육(엘리트체육)
대 상	학 생	모든사람	청년(최적연령기)
활동내용방법	의무적	자발적, 즐거움	의무적
내 용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등	놀이, 게임, 스포츠, 체력운동, 무용등	정규스포츠
시 간	수업시간	자유시간	훈련과 시합시간
장 소	학교체육시설	자유시간	정규체육시설
의도성	강	약	강
이 유	교육	여가, 욕구충족	승리, 직업영역

※ 우리나라 체육의 모델은 부실한 ‘뿌리’와 ‘줄기’에서 풍성한 ‘열매’만 수확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학교체육의 영역별 특성(류태호, 2004)

- 학교체육은 ‘체육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규 체육수업’과 특기 계발을 위한 교육활동인 ‘과외자율체육활동’으로 구분
 - 과외자율체육활동은 학급, 학교내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교내 체육활동’(intramural sports)과 학교간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간 체육활동(inter-scholastic sports)’으로 구분

	정규체육수업	과외자율체육활동	
		교내체육활동	학교간 체육활동
유사 개념	정과체육, 학교체육	대내경기, 교내경기 클럽활동, 특별활동	대외경기, 학교간경기, 학원스포츠
목적	체육기본소양교육 (교육)	운동기능심화 및 재미 (교육, 여가, 욕구충족)	특기·적성 전문 (교육, 승리, 진학, 직업)
대상	모든 학생	자율적 참여 학생	운동특기 학생
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다양한 스포츠 종목	특정 종목
참여 방식	의무적 (교사주도)	자율적 (학생주도)	자율적 < 의무적 (감독, 코치주도)
시간	체육수업시간	특별활동시간, 방과 후	수업시간 < 방과 후
교육적의도	강	중	하

※ 선진국의 체육은 운동기량이 우수한 학생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적 목적과 분리된 형태의 ‘체육특기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학교운동부는 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는 과외 자율체육활동으로 재규정해야 함

□ 각 영역별 체육지도자의 정의(교과부·문체부, 2009)

-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로 정의(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체육의 영역에서 스포츠 강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의 흥미유발과 활성화를 위한 계약직 교사임
 - 학교운동부의 전임코치는 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비인기 종목)
 - 학교 운동부의 일반코치는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코치(인기종목)

II. 이상한 나라의 ALICE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이해하기 위해 각 영역의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ALICE라는 용어로 제시하였다.

- ☞ ①Abnormality(비정상) :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국가자격증의 허와 실, ②Lethargy(무기력) : 체육지도자의 불안한 신분과 직업적 안정성의 결여, ③Insanity(몰상식) : 폭력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④Complex(콤플렉스) : 구조에 대한 무저항, ⑤Enigma(수수께끼) :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를 국가차원과 학교차원에서 제시

1 Abnormality(비정상) : 국가자격증의 허와 실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08)

- 체육지도자 실기평가의 객관성 미흡
 - 경기지도자 1급, 생활체육지도자 1급과 2급은 체육과학연구원
 - 경기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은 각 지정 연수원에서 시행
 - ※ 각 연수원 위탁에서 실기 및 구술검정의 표준화 미흡, 상대적으로 검정이 수월한 연수원에 수험생 집중

종류	등급	종목	응시자격
경기지도자	1급	50개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 1년이상 경기지도 경력자 ○ 체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자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교 졸업자로서 4년이상 경기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서 6년이상 경기경력자
생활체육지도자	1급	운동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 운동처방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 ○ 2급 자격자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급	42개 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과정) ○ 만18세 이상인 자(일반과정)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종류 및 등급간 연계성 부재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008)

- 생활체육지도자 1급은 ‘운동처방’, 2급과 3급은 ‘운동지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경기지도자 2급 97%, 1급은 3%, 생활체육지도자 3급은 93.7%, 2급은 4.9%, 1급은 1.4%
 - ※ 등급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상위 자격취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1급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이 부족
- 장애인, 노인, 유소년 등 특수대상 지도자자격증 부재

□ 체육지도자의 공급과잉

- 2008년 현재 약 8만여 명, 2010에는 약 10만여 명의 체육지도자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자 현황 (2008. 5. 31)

구분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총계
	1급	2급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인원	636	18,565	19,201	581	6,590	107,288	114,459	133,660

※ 현행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등록·체육시설의 체육지도자 의무 고용 시설의 완화추세와 맞물려 체육지도자 공급 과잉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 자격증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자격증(권민혁, 2007)

- 체육관련 업체에서 개인능력을 대표하는 요인
 - 경력 56%, 자격증 26%, 학력 5%, 기타 7%
- 체육지도자 채용 시 최우선 고려사항
 - 인성 및 성실성 55%, 경력 13%, 자격증 13%, 지도능력 9%, 실기능력 3%, 전문지식 2%, 학력 1%
- ※ 민간자격에 비해 국가자격증의 영향력은 크지만, 체육지도자의 93.4%는 자격증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다고 응답

□ 체육지도자의 취업현황 : 국가자격 취득응시자(520명) (권민혁, 2007)

- 임금근로자의 직업현황
 - 상업체육시설 지도자 및 관리자 : 25%
 - 체육교사 및 교수 : 20.2%
 - 공공체육시설 지도자 및 관리자 : 18.1%
 - 지역생활체육 지도자 : 16.7%
- 임금근로자 71.2%, 비임금근로자 18.5%
- 비임금근로자의 직업현황
 - 태권도장 25%, 기타 무도관 및 체육관 11.9%, 헬스클럽 6.0%
 -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 응시자를 표본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는 체육교사 및 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실기검정 - 이론연수 - 필기검정)과 달리 ‘특별과정’ 응시자로 실기검정만 받으면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는 특혜가 있기 때문

□ 임금 및 소득 : 국가자격 취득응시자(520명) (권민혁,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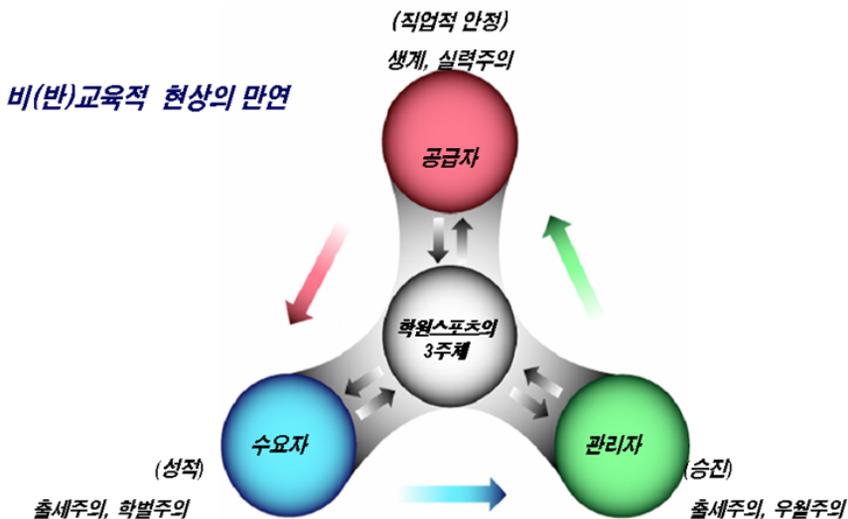
- 임금 및 소득
 - 임금 근로자 : 201.15만원, 비임금 근로자 250.1만원(권민혁, 2007)
 - ※ 특히, 임금근로자 중 교사와 교수를 제외하고, 상업·공공·지역 체육시설의 지도자의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140-180만원이 평균임금임
 - 전임코치 : 133만원, 일반코치 평균 150만원(문체부, 2008)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포
 - 임금근로자 : 정규직 50.2%, 비정규직 49.8%
 - 임금근로자 중 57.9% 승진기회가 없다고 응답
 -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6)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은 길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음

3

Insanity(몰상식) : 승리지상주의와 폭력을 정당화해 준 우리들

□ 학교운동부: 교육주체간의 암묵적 합의가 만들어낸 폭력의 악순환의 구조 (류태호, 2004)

- 수요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고, 직업선수로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 공급자로서 감독 및 경기연맹은 ‘우수선수의 발굴’, 경기력 향상을 도무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의 신장, 실적에 집중
- 관리자로서 학교와 교육청 등 역시 실적과 관련된 성적에 집중



※ 학원스포츠의 세 주체의 이해가 비교육적으로 일치. 특히 학원스포츠(학교운동부)가 학교체육의 일환이어야 하지만 학교가 지양하는 전인교육의 성취와는 관련 없이 왜곡된 형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음

□ 스포츠 폭력 등 인권침해 현황(국가인권위원회, 2009)

- '08.11.19.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기획보도('08.11.10~17)에서와 같이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수업결손 현상이 여전

히 심각

- “중·고교 학생선수 78.8% 폭력 경험, 63.8% 성폭력 피해 겪어, 폭력 경험 학생 56.4% “운동 그만두고 싶다”
-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어요”
 - ※ 수업 참여시간 - 시합 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
 - ※ 82.1%의 학생이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을 받지 못함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08.11), 학생선수의 약 78.8%가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 코치, 감독 등 지도자의 폭력이 가장 빈번하며 주로 훈련장소에서 발생

□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및 방안(교과부·문체부, 2009)

-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07.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폭력 예방 등 대책마련 요구
- 교과부, 문화부, 대한체육회 합동 폭력(성폭력 포함) 근절대책 발표(‘08.2.18)
 - 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조치, ‘체육계 통합 폭력 신고센터’ 설치 등
-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시행(‘08.2.20)
 - 시·도교육청 체육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안내
-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08. 12)
 - 최저학력제 도입,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등 발표
 - ※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수 개인 및 지도자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찾지 보다는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 구조를 개혁해야 함

□ 체육지도자에게 운동기능 선수자로만의 역할 규정

- 선수의 인성교육이나 스포츠 문화전수와 같은 역할수행은 없음
- 팀 성적에 의해서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지도자
- 몸만 있고 머리는 없는 기능 선수자로 전락
 - ※ 특히, 학교체육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학교운동부의 경우에도 교육자로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주어지지 않고, 오직 경기실적에 의해 지도자를 평가하는 구조임

□ 거부할 수 없는 위계 구조

-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 불합리한 종목별 행정체계에 대한 수용
- 저임금의 불안한 신분
 - ※ 체육지도자와 관련된 조직의 문제를 불안한 신분 및 왜곡된 역할 규정으로 잘못된 관습인 것을 알지만,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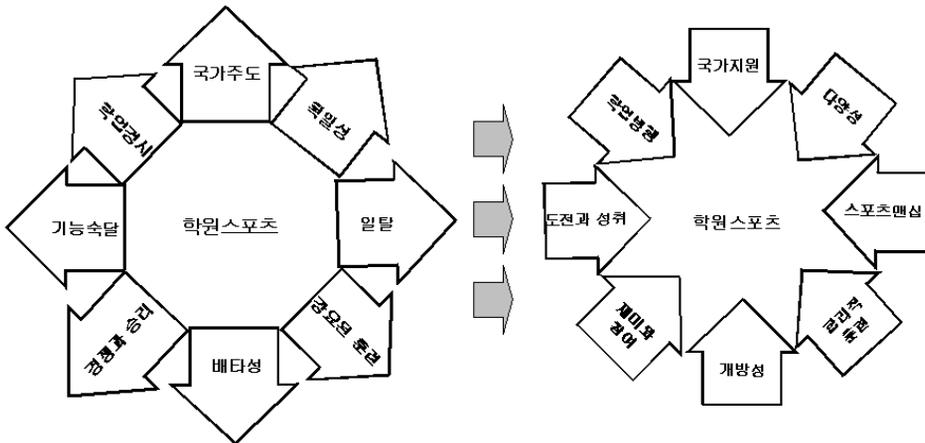
- 각종 비리의 ‘가해자’로만 비춰지는 현실
- 단기간의 성적 제조기
- 왜곡된 역할 기대
 - 국가수준에서는 저 비용으로 학생선수 육성의 산과 역할 기대
 - 지역 및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실적으로 창조하는 지휘자의 역할 기대
 - 학생(학부모) 수준에서는 우수선수의 길잡이와 진학 및 취업 통로의 역할 기대

5 Enigma(수수께끼) : 해법찾기

【국가차원】

□ 학원스포츠(학교운동부)의 패러다임의 변화 : 전인적 성장 중심의 학교운동부 문화로 변화

- 국가주도에서 국가지원의 형태로 변화하고, 학업을 병행을 통해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화
- 운동만을 강요당하는 획일적 생활과 강요된 훈련 방식에서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경험하고, 재미와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훈련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학교운동부를 엘리트 선수 육성의 기반으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음



※ 국가주도의 학교운동부는 스포츠 저변확대에 장애물이 되었고, 스포츠는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음. 또한 스포츠는 오로지 승리만이 학원스포츠의 목표가 되어 기증 숙달을 위해 획일적이고 강요된 훈련만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를 만연시켰음.

□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의 개선(권민혁, 2007)

- 체육지도자 자격명칭 변경
 - 체육지도자는 운동사,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운동사, 경기지도자는 전문운동사로 변경
 - ※ ‘자(者)’라는 용어보다 ‘사(師)’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문가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변경
- 체육지도자 종류 및 등급 개편
 - 생활운동사와 전문운동사, 건강운동사(운동처방)의 3개 영역으로 분리
 - 유소년 및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추가취득 과정에 개설하여 대상별 자격증 신설
 - ※ 현행 생활체육지도자 3단계와 경기지도자 2단계의 등급을 생활운동사, 전문운동사, 건강운동사로 3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자격 중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은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자격의 위상 강화.
-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 이론 평가 강화
 - 실기평가 주체의 변경(종목별 연맹이나 협회로 이관)
 - 실무 연수를 도입
 - 현장교사나 특정 학력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자격부여 및 특별과정 폐지

□ 체육지도자에 대한 Data-base 구축

- 체육지도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 운영
 - 노동시장의 분석을 위해서는 자격 취득자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이 가능해야 함
 -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직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지식, 기능, 기능, 능력,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체육지도자의 인력 Pool 구축

□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교과부 · 문체부, 2009)

- 학교운동부 지도자(교육청 고용 전임코치) 보수 현실화(문화부안)
 - 전임코치의 경우 인기 종목을 지도하는 일반코치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으므로 전임코치를 처우개선 우선 대상으로 함
 - ※ 전임코치(3,115명) 월평균 보수 130만원 → 180만원 수준으로 인상
 - '09~'12년(4개년) 동안 연차적 인상 후 '12년부터 180만원 수준 유지
 - 1안 : 3,115명 대상, 연 12만 5,000원씩 연차적 인상('12년 50만원 인상)
 - 2안 : 학생선수 수업 참여율 등이 우수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인센티브로서 급여 인상(수혜자 및 수혜액 연차적 확대)
- 지원형태 : 시·도 교육청, 문화부 5 : 5 매칭
 - '09년 시범사업(문화부 단독사업) : 문화부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 47억 사용
- 소요예산 : 연 186억 9,000만원 추가 소요
 - 총소요예산 : 672억 8,400만원(3,115명×180만원×12월)
 - 현행 : 485억 9,400만원(3,115명×130만원×12월) / 시·도 교육청
 - ※ 현재 전임코치 인건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전액(537억원, '07)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지원 확대 필요

• 전임코치 : 130만원 → 180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08	'09 (12만 5,000원 인상)	'10 (25만원 인상)	'11 (37만 5,000원 인상)	'12 (50만원 인상)
대상인원		3,115	3,115	3,115	3,115	3,115
총 소요예산		48,594	53,267	57,939	62,612	67,284
추가소요예산('08대비)		-	4,673	9,345	14,018	18,690
재원분담	교육청	48,594	48,594	53,266	55,603	57,939
	문화부	-	4,673	4,673	7,009	9,345

□ 체육지도자 윤리강령 제정(2007년 체육부문 기관 윤리강령 표준안(시안)중 일부)

제23조(지도자의 윤리의식 강화)

- ① 감독과 코치 등 각 팀의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폭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독과 코치 등 각 팀의 지도자는 선수들로 하여금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감독과 코치 등 각 팀의 지도자는 지연, 혈연, 성, 계층 등에 따른 선수 차별을 금하여야 한다.
- ④ 각 급 학원의 지도자와 관리자는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한 팀 관리)

- ① 감독과 코치 등 각 팀의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부 조작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감독과 코치 등 각 팀의 지도자는 불공정한 스카우트의 강요 또는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강요 또는 청탁을 받은 경우 단호히 거절하여야 한다.
- ③ 감독과 코치 등 각 팀의 지도자는 선수와 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과 향응을 요구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착의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자로서 체육지도자의 책무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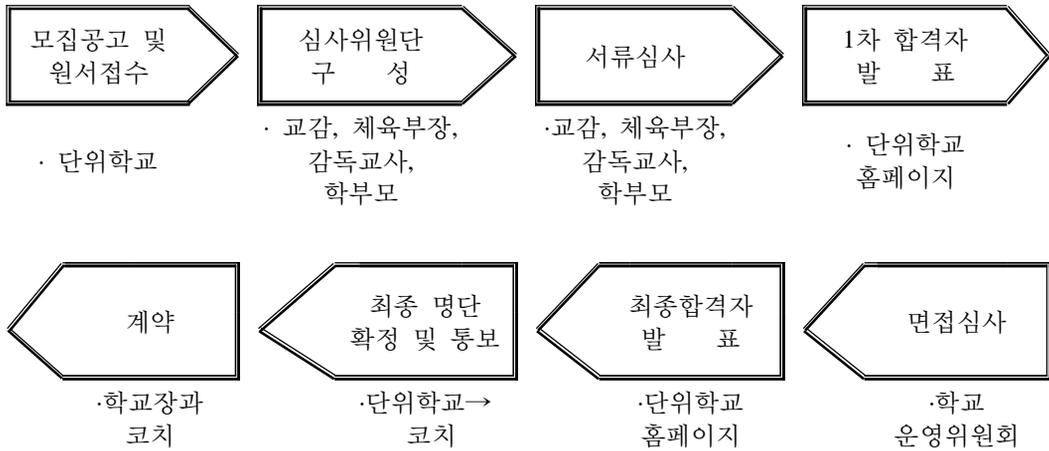
- 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
- 체육지도자의 청렴성
- 체육지도자의 실천성(경기 실적)
- 공공성
- 자기개발

5 Enigma(수수께끼) : 해법찾기

【학교차원】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절차의 개선

- 현재 : 시도교육청 코치관리규정(권고사항) → 단위학교장 위임
→ 단위학교 체육관련자의 추천 → 학교장과 코치의 계약
- 개선안: 스포츠강사 지원시스템(교육과학부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준용



□ 서류심사

- 자격 및 경력사항
 - 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자격 내용 : 경기지도자(1, 2급), 생활체육지도자(1-3급), 각 연맹별 코칭스쿨이수자, 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실기교원자격증, 4년제 체육관련학과 학위자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 경력 내용: 학교운동부 지도 경력, 국가대표 경력자, 시도 대표 경력자 등과 관련된 증빙서류

□ 서류심사 방법

- 자격평가 : 응시원서의 자격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능력평가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업무수행력, 직무적성, 지도 및 선수 경력의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면접심사

- 학교 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 지도자의 역할 수행 능력, 인성, 현장 적응력, 사회성 등의 항목을 면접하여 평가

□ 표준 계약서 작성

- 학교장과 코치간의 표준 계약서 작성

□ 교육연수

- 학교운동부 운영, 학생선수의 인권관련 교육 등

【자격검증 시스템】

□ 자격검증 시스템의 도입

- 코치 역할의 재규정
 - 전문운동지도자, 교육자, 상담사, 역할모델 등
- 학교별 윤리강령 제정
- 제정된 복무규정을 통한 평가

Ⅲ. 또 다른 고민과 새로운 시작

학교운동부의 정상적 운영과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 ①학교운동부의 비전(ADPE) ②운동부지도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③학교운동부 국가자격과정 신설 ④운동부지도자의 감독권에 대한 재해석

□ 학교운동부의 비전(ADPE)

- 학업병행을 통한 전인적 성장
- 운동특기 계발 차원의 합리적 훈련
- 승리지상주의에서 참여의 가치를 경험하는 본질 추구
- 선수만이 독점하는 폐쇄적 구조에서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로 참여의 폭 확대

학교운동부의 비전	방 향
교육적 목적의 달성 <i>Achievement of educational objective</i>	- 운동과 수업 병행 - 인간성 계발 - 민주적 사회인 양성
운동특기의 계발 <i>Development of athletic speciality</i>	- 운동참여의 재미와 즐거움 - 합리적 훈련방식 - 개인의 적성에 맞는 운동특기 계발
스포츠의 본질 추구 <i>Pursuit of the spirit of sport</i>	- 도전과 성취감 - 페어플레이 정신 - 스포츠맨십
참여폭의 확대 <i>Enlargement of the extent of participation</i>	- 학생중심 - 개방적 형태의 운동부 활성화 - 전국민의 스포츠 향유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정체성과 교육과정 구성

- 운동경력자는 운동지도자가 되는 구조의 개선
 - 승리지상주의, 인권의식 결여, 교육관의 부재 등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
- 기능중심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양성과정의 개선
 - 전문지도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안적 교육과정의 구성

□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가자격제도

- 교육자로서 지도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객관화된 자격 요구
 - 예를 들면, 체육과학연구원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과정 신설
- 임용 대상자에 대한 검증 절차의 합리화
 - 교육적, 인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감독권'에 대한 재해석

-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과 경기운영(선수기용 등)의 절대적 권한이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
 - ※ 운동부 지도자의 불안한 신분에서 경기실적을 위한 학생의 학습권, 자율권, 행복추구권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 함

참고문헌

- 고은하(2003). 운동선수 구타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서울 : 체육과학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관련 주요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국감대비 자료집. 2008-12.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자료집. 2009-2.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2009).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공청회 자료집.
- 권민혁(2007). 미래지향적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구축 방안. 문화관광부 공청회 자료집.
- 류태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지원부 교육정책연구 2003-지정-08.
- 류태호(2004). 학생선수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학생선수 육성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4-24.
- 류태호(2006a). 학생선수도 공부하고 싶다. 국회의원 안민석 2006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 류태호(2006b). ‘메달 집착’의 신화. 교육인적지원부 2006년 학교체육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 류태호(2007). 학생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운동선수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55-64.
- 류태호,이주욱 (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271-282.
-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2008).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 서울시 교육청(2008). 학교체육 내실화 방안.
- 안민석(2009). 학교체육법안 대표 발의문.
- 체육백서(2004). 문화관광부.
- 홍덕기 ·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 본 학생선수.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31-155.

전임코치 근로계약서(예시)

제1조 (계약당사자) OO학교장 “갑”을 사용자로 하고, 전임코치 000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갑) : OO학교장 ○○○

(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2조 (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근무내용) “을”은 다음과 같이 “갑”이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직 무 : ()학교 ()부 전임코치
2. 근무장소 : ()학교 ()부 훈련장, 기타 장소 ()
3. 담당업무
 - 가. 학교운동부 훈련지도 및 관리
 - 나. 훈련시 안전지도
 - 다. 훈련장 관리
 - 라. 기타 사용자가 명하는 운동부 육성관련 업무

제4조 (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0 . . 부터 200 .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근무일)

1. 코치의 근무일은 근무학교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2. 학교의 장은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시합출전, 합동강화 훈련, 합숙 훈련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시간)

1. 코치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에 관한 조례. 이하 같다)을 준용하되, “갑”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2. “갑”은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타 학교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1. 코치의 보수는 월급()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2. 월급은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8조 (퇴직금) “갑”은 “을”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에 대하여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학교의 장은 코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
 - 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때
 - 라. 소속 팀의 해체 및 조정,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 한 때
 - 마.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때
 - 바. 체벌,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 사. 선수육성 소홀 및 적정 선수 수 미확보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야기한 때
 - 아. 사용자의 허가 없이 선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 직무를 겸했을 때
 - 자. 계약 후 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실적이 없을 때
 - 차. 계약 후 2년간 상급 학교에 체육특기자 진학지도 실적이 없을 때
 - 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 때

제10조 (재계약)

1. 근로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2. “갑”은 “을”이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한, “을”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1.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코치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상기 계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00△년 △△월 △△일

“갑”	“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학교장 ○○○ (직인)	()학교 ()부 전임코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인)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 ○○학교 ○○부 전임코치로 근무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 소속 학교장의 명을 받아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한다.
- 소속팀의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학부모와 어떠한 경우에도 물의를 야기치 않는다.
-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꾸준한 자기 연찬을 계속한다.
-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청의 어떠한 조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08년 월 일

성명 : (인)

학교장 귀 하



현장에서 바라본 학원스포츠 지도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

이 병 호

(서울체고 교사,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현장에서 바라본 학원스포츠 지도자 자격 강화 및 처우 개선 방안

이 병 호 (서울체고 교사,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위원)

1. 들어가는 말

학교운동부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교육적 비판을 넘어서 인권의 측면에서 조명된 데에는 최근 몇 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특히 체육계 내부의 개선 노력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외부의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지속적 관심은 이 문제의 공론화를 도출하였으며 조금씩 변화해가는 현장의 모습에 고무되지 않을 수 없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학원스포츠 지도자의 문제로 국한시켜 바라보고자 하였다. 발표자는 불분명한 ‘체육지도자’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에 이어 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상한 나라의 ALICE"로 문제 상황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 자격증으로서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문제점과, 둘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이하 코치)의 직업적 안정성의 결여로 인한 ‘무기력’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운동부의 “승리지상주의와 그것을 정당화해 준 우리들”의 방조 책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넷째, 코치들의 학교운동부 “구조에 대한 무저항”에 대해 지적하며, 다섯째로 “해법 찾기”에서 이러한 국가 차원과 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기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을 두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코치의 문제는 그 자체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서 학교운동부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코치의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치들은 그동안 인권위에서 발표한 학교운동부의 반인권적 문제들의 가장 큰 가해자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코치들은 1년 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교육적, 인권 친화적 지도로 평가받지 않으며 경기결과에 따라 계약이 연장, 또는 해임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처지로부터 단시일 내에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반인권적인 행위가 유발되는 측면을 간과하기 어렵다. 즉 이 문제는 코치들의 인권 친화적 지도를 어렵게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들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가 과연 인권 친화적 지도로 귀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결국 코치의 문제는 학교운동부의 왜곡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코치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은 적어도 지금 여기에서는 인권 친화적 지도자로서의 그것과 동시에 엘리트체육 지도자라는 측면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학교운동부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학생선수들의 운동기능, 즉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 단지 그러한 능력을 인권 친화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라야 한다는 데에 코치의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운동부가 엘리트체육의 주역을 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야 한다는데 합의한다면 코치의 역할 역시 인권친화적인 지도력의 필요조건과 탁월한 경기력 지도의 충분조건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지점에서 코치의 처우와 자격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견해이다.

3. 무엇이 문제인가 - 코치 자격 및 임용 기준

발표자는 코치의 처우에 대한 문제로서 매우 불합리한 코치 자격 기준 및 임용기준 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사실 코치의 해임 사유와 관련하여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등에 입상을 하지 못할 경우를 해임의 사유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으로서의 코치 신분이 사실상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등의 경기실적에 의해 좌우되며,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매

우 불안한 직업의식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코치의 자격 및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치의 능력을 이와 같이 특정 대회의 실적이나 경기력만으로 평가하는 현실에 따라서 실제로 코치가 수행하는 역할 역시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선수선발이나 학부모들과의 관계, 진학관계 등은 물론이고, 대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운동부 학생들의 인성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나 스포츠에 대한 기능적 차원을 넘어선 이론적, 문화적 접근에 대한 역할수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코치의 임용기준의 문제는 사실상 감독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코치 임용이 감독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실 감독의 관리 감독의 역할의 중요성은 어디까지나 학교운동부의 교육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당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독교사의 관리 감독 권한은 코치의 비정규직이라는 직업적 특성과 맞물려서 서로 간에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히 코치 입장에서는 임용권자와 더불어 근무의 지속을 위해서 감독의 운영방식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행정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운동부 학생들의 효율적 지도를 위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자율적 지도 권한이 상당부분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4. 왜 그러한가?

발표자는 코치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의 현상적 원인으로서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의 승리지상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토론자 또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현장의 관점에서 승리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두 가지의 원인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의 문제이다. 양 대회와 관련된 코치의 직무에 대한 기대치는 그들의 근로조건 전반의 열악한 현실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다. 앞서 지적한대로 코치 평가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대표 선발, 입상실적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코치의 해임 사유로서 코치들로 하여금 열악한 여건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갖게 하기 보

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훈련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의 문제들은 학생선수들에게 귀결된다. 즉 성장 단계에 알맞은 적절한 훈련프로그램과 훈련강도의 처방 등은 이론서의 지침이 될 뿐이다. 만일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진정으로 소신 있게 학생들을 위한 보다 먼 장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지도하고자 한다면, 당장의 입상실적은 포기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지도자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결단에 이를 수 있겠는가? 결국 코치에 대한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으로 대변되는 승리지상주의로부터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입학 과정의 체육특기자 제도의 문제이다. 코치에 대한 직무의 기대치는 학생들의 운동기량을 향상시켜 원하는 대학에 특기자로 입학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원하는 대학에 특기자로 입학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 즉 각종 경기대회의 입상실적을 딸 수 있도록 코치 및 감독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다.

〈표 1〉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의 주요 내용(2005학년도)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방법
건국대 (서울)	단체전 8강, 개인전 6위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영역 평균등급 9등급 이내, 또는 고교교과 성적 백분위 97% 이내인 자	
경희대 (수원)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발행한 경기 실적 증명서	없음	
고려대 (서울)	-단체종목: 전국대회 16강 -개인종목: 국가대표,상비군 전국 또는 국제 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수능 1개 영역 8등급이내	특기평가 면 접
국민대	전국대회에서 개인종목 8위 이내 입상한 자	없음	입상성적 80 면접 20
단국대 (천안)	전국대회 경기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없음	학생부 50% + 실적 50%
경희대 (서울)	단체전 8위 이내 입상	없음	학생부 40 + 경기실적 40 + 면접고사
명지대	단체종목: 최근 3년간 8강(개인전, 단체전) 이내 골프: 최근 3년간 30위(개인전) 이내 입상자	없음	학생부 100 + 면접 100 + 경기실적 10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방법
서울대	개인종목은 1위 입상자 단체종목은 3위 이내 입상자	대학수학능력시험 2개 과목이 상 5등급이내	1단계 서류, 2단계 1단계 성적100+면 접60+교직인성검사 40
세종대	전국규모대회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내 입상 자	수능 외국어 8등급 이상	입상실적80%+생활 부20%
숭실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경기종목 중 입 상자	수능 한 개 과목 이상의 성적 이 8등급 이내인 자	입상실적70%+면접 30%
연세대	단체종목 : 16강 이내에 입상자 개인종목 : 전국 또는 국제규모 대회에서 3 위 이내 입상자	없음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1단계 서류
용인대 (사회체육)	전국대회 3위 이내	없음	생활부10-20%+면접 10(전공실기40%)+ 입상실적 80-40
인하대	단체전: 전국대회 8강 이내 개인전: 전국대회 2위 이내	없음	1단계 실적100 2단계 실적50+면접 50
중앙대	단체전: 전국대회 16강 이내 개인전: 전국대회 3위 이내	없음	수상실적 80%+면접 20%

문제는 이처럼 경기실적이 대학진학에 거의 전부로 작용함에 따라 학교운동부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이다. 이른바 엘리트체육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 많은 학생들은 전국대회 입상실적을 올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일이다. 그러나 일단 전국대회 경기실적을 확보하면 대학의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훈련에만 열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기대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때려서라도” 지도해 달라는 극단의 요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대학 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교운동부의 승리지상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는 코치의 처우와 자격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가차원과 학교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코치 처우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5-1. 임용 경로의 개선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임용 경로를 개선하는 일이다. 감독교사의 절대적인 추천권한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화된 지도자 임용 과정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개인적 추천만을 통해서 임용되는 지도자 임용의 현실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지도자 자격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이를 임용 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체육과학연구원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과정을 신설하여 자격 여부를 기준으로 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과정에는 물론 인권 관련 및 교육 관련 과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용 전에 반드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격을 갖춘 지도자 임용 대상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도자와 감독교사 및 추천자 등 운동부 관계자들이 배석하여 임용 후에 운동부 활동에 대한 기획을 피력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운동부 지도의 교육적, 인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도자 임용 전이나 근무하는 과정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2.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도자의 자질 개선을 위해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임용 후에 어떠한 재교육 과정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일단 임용되고 나면 따로 평가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운동부 학생들의 경기실적만을 통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트레이닝의 최신동향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과, 학생 지도 과정의 인권 친화적, 교육적 측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관련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체육과학연구원 등을 통하여 지도자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자의 경우는 인권위와 교과부, 교육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내용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5-3. 지도자의 책임성 강화

지도자의 자질을 강화한다는 것은 크게 지도자 자격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강화된 자격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자격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떤 권리와 자율성을 갖기에 합당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과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의 권리부여는 기존의 문제들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지도자와 관련된 부정적 문제들을 모두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처우 개선으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매우 큰 오류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도자의 처우가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문제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도자의 책임 강화는 사실상 처우 개선의 전제가 되어야 할 대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재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운동기능의 전수자에 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동부 학생들의 경우 지도자로서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감독교사보다 높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현재의 지도자의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점에서 지도자의 책임성 강화는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그것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발표자가 제안한 것처럼 ‘코치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

5-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 방안

5-4-1. 지도자의 정규직화¹⁾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 코치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가장 큰 테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라 보인다. 사실 지도자의 정규직화는 그 동안 여러 차

1) 코치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토론자의 판단은 앞서 논의한 코치의 책임성 강화를 전제한 가운데 진행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원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과연 지도자의 정규직화가 지도자 신분의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며, 정규직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운동부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문제는 지도자의 정규직화의 내용이다. 우선 정규직이 될 경우 임용 주체의 문제이다. 우선 현재 엘리트체육 양성 차원에서 도입된 학교운동부 관련 지원 업무가 문화관광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차후 문화관광부 또는 예하 기관 등에서 파견하는 형태의 정규직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속기관 자체가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익숙된 근무여건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지도방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현재 대부분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교육청 소속 또는 학교자체에서 임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제히 소속을 옮기는 것에 대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존의 임용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문화관광부 또는 예하 기관 소속의 정규직을 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 수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등 시도단위의 대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시도 단위의 실업팀이 대부분 육성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이를 확대하여 지역의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지도자임용의 주체가 지자체가 될 경우 운동부 지도 시간 이외에 지자체의 생활체육이나 스포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학교운동부 육성과 지역사회의 체육 저변 확대를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안정된 정규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단지 그 동안 운동부 지도에 몰입했던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경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의 부작용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지도자의 안정적 직업 보장의 측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다 임용단계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책임성에 기초한 소속감이 마련되어

학생에 대한 전문적·교육적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5-4-2. 보수의 현실화

현재 지도자의 보수는 시·도에 따라, 종목에 따라,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지도자의 보수는 그 역할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공식적 지도자 임금은 110~120만원 정도이다. 이 정도의 보수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갓 대학을 졸업한 초임 지도자 등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후원회를 통하여 발전기금 형태를 통한 추가 보수를 받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지도자의 경우 보수의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한 차이는 대체적으로 지도자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경력이나 나이, 가정,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대체적으로 볼 때, 지도자의 공식적 보수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때문에 학부모의 후원회를 통한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자의 직무 수행에 합당한 보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교육정책의 흐름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겠다. 운동부 관련 사교육비의 대부분이 지도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현실은 엘리트 체육 양성을 위한 상당한 재원을 학부모들로부터 얻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진학과 관련하여 그만둘 수 없는 학교체육의 구조, 그리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교체육의 현실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도 학생선수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운동선수로서의 진로에 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 점에서 현재의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지도자 보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도자의 정규직화를 전제한다면 지도자 직무에 대한 보수 역시 합리적으로 공무원 직급 체제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공무원으로서 정규직화 될 경우) 따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들에 의한 보수 지급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도자의 정규직화는 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통한 보수의 현실화 측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이라는 긍정적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4-3. 계약 내용의 교육적 상세화

만일 코치의 정규직화가 실현된다면 기존의 학교운동부 운영 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감독의 관리 감독의 범위와 지도자의 역할 규정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다. 그 동안은 계약직에다가 추천자인 감독, 학부모, 동창회 등의 의견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정한 근로 조건이었지만, 이제 정규직화 될 경우 운동부의 경기기능 전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독자적인 경기지도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감독교사나 학부모 등의 과도한 지도 요구나 불합리한 의사소통 구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감독교사나 학부모 등의 입장에서는 운동부 지도에 대한 의견충돌의 어려움을 예상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지도자의 책무와 역할에 대하여 가능한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명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교육적인 지도방식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가칭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면 이 규정은 교육청 또는 학교 수준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명문화 과정에서 임용주체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파견된 지도자의 지도활동 이전에 반드시 숙지되어 불필요한 의견충돌로 인한 운동부 지도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되, 교육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나오는 말

지난 2005년 국회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토론회가 있던 이후로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가 발족되기까지 코치들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급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이 진정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전문성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는 과제인 듯싶다. 단순히 법제도의 개정만으로 그

들의 직업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직업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이 결국 코치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인으로서의 그것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동부의 거시적 문제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학교운동부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이자 체육 인재를 기르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얼굴처럼 소질 또한 무수히 다양하다. 토론자가 생각하는 교육의 이념은 이렇게 저마다 타고난 다양한 소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발현시키는 데 있다. 코치는 운동에 대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현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점에서 코치 또한 교육자이다.

이제 교육자로서의 그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감과 자율성을 주되,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합리적 임용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엄선된 지도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안정적 처우를 제공하되, 선수 선발과 양성의 선진화된 엘리트체육 시스템의 전문인으로서 기대효과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1. 『학교체육법』 제정안 (국회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 23.)
2.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계획 및 명단



학교체육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37
----------	------

발의연월일 : 2009. 1. 23.

발 의 자 : 안민석·김춘진·권영진
박보환·조전혁·임해규
장세환·박은수·최문순
장기정·김영진·양승조
김재운·최재성·천정배
의원(15인)

제안이유

학교체육은 체육이라는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모두를 포함하며,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핵심 영역임. 학교체육은 국가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토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의 체력수준은 성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은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그 동안 학교체육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던 엘리트체육은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로 인하여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계획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포함시키고 이를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에게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동부 지도자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및 장애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

학교체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절하고 고른 체육활동 및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지닌 미래의 국가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의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교 1기”란 학생선수가 아닌 학생들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정 종목 진흥 사업을 말한다.
4. “학교운동경기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5. “학생선수”란 학교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선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하며,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3. 체육교재·교구·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원
4.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제12조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연수 및 자질 향상
5. 학교운동장·체육관 등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6. 체육관련 체험교육 및 수련활동 지원

7. 저체력 학생을 위한 시책사업 지원
8. 제9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체육행사의 개최와 지원
9.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저학력 기준 설정·운영
10.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원
1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
12.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13.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책과 관련한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운영계획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포함시키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가 체력증진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강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 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9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원
3.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4.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기적 실시
5.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저체력 및 비만학생에 대한 대책
6.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7. 1교 1기 및 1인 1운동 프로그램 운영
8. 교원의 체육관련 직무연수 장려
9. 스포츠 경기관람 프로그램 운영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여 성과가 탁월한 학교와 교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적절하게 확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정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방법, 측정 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및 비만관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스포츠클럽) ① 학교의 장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 중 1인 이상을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정규수업 이수에 소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교운동경기부 내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명량한 학교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식대회에 출전을 허락하여서는 안된다.

④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 기준 및 실시 시기와 제4항에 따른 학기중 합숙훈련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경기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예산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인격과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및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선발, 교육·연수, 근무조건, 역

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유아 및 장애인 단체나 체육단체, 대학의 체육학과 계열, 교습학원,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위탁운영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원의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4. 그 밖에 학생 및 아동·청소년에 적용되는 기금의 일체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을 사용할 경우 그 범위와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2.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3.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배치
4. 제12조에 따른 스포츠강사 배치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주체는 국가가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청할 경우 기금의 가용재원의 범위에서는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기금의 집행은 운용주체가 사업지원 방식으로 한다.

제15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체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평가기준 등 지표 개발
5.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6. 교원,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 등의 연수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진흥연구기관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와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체육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학교의 장의 권한 중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의 능력검사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에 포함시켜 실시한다.

학교체육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7조 ①항)
- (2) 학교의 장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안 제9조 ①항)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안 제12조 ①항)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안 제13조 ①항)
- (5)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 소속하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안 제15조 ①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이 되는 (1)·(2)·(3)의 사업들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여

기추진중인 사업임.

(4)의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의 경우 학교운영비 또는 유치원운영비 외의 별도 예산지원 범위를 추정하기가 어려움.

(5)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동훈련으로 중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향후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횟수 등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회의진행에 필요한 예산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국회의원 안민석 비서관 허남동 (02-788-2704)

<참고자료>

1. 학생건강체력측정평가 확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안)

- 2009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

사 업 명	소요액(백만원)					비고
	2008	2009	2010	2011	계	
1) 응용 S/W 개발(소계)	1,300				1,300	특교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추가 개발	1,100				1,100	
○ 교육정보시스템(NEIS) 수정·보완	200				200	
2) 물적기반 구축(소계)	2,000				2,000	특교
○ 시·도교육청별 H/W 및 시스템 S/W 구축비	1,950				1,950	
○ 인증서비스 제공	50				50	
3) 측정장비 구비(소계)		38,560	22,867	17,838	79,265	
○ 학교별 측정장비 구비		33,160	17,467	12,438	63,065	교특
○ 지역교육청별 측정장비 구비		5,400	5,400	5,400	16,200	교특
합 계	3,300	38,560	22,867	17,838	82,565	

* 특교 : 특별교부금/ 교특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체력평가 확대시행 계획 (2008. 9)

2. 학교스포츠클럽

- 교육청에 학교스포츠클럽 등록·관리
- 지역교육청 : 초·중학교 / 시·도교육청 : 고등학교(고1~3학년)
- 등록율 목표: '07(8.1%)→'08(15%)→'09(20%)→'10(25%)→'11(30%)→'12(35%)
 - ※ 등록학생수 증가 : ('07) 8.1%(460,591명) → ('08) 17.1%(1,003,575명) 9% 증가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 교내 대회(학급, 학년별 대회) → 지역교육청 대회 → 시·도교육청 대회
- 대회개최비(특교 등) : '07~'12년까지 총 17,450백만원 지원 예정

〈학교스포츠클럽 사업예산('07~'12년)〉

(백만원)

년도 재원	'07	'08	'09	'10	'11	'12	합 계
교과부	2,000	2,000	2,500	3,000	3,500	100	13,100
문화부	-	50	100	100	100	100	450
교육청	-	-	-	-	-	3,900	3,900
합 계	2,000	2,050	2,600	3,100	3,600	4,100	17,45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주요 업무계획

3. 스포츠 강사 배치

-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09. 3. ~ 12.(10개월 / 1~2월은 채용 및 연수)
 - 지원규모 : 16개 시도 1,000명
 - ※ 강사 1명이 1개 학교당 7개 학급(주당 21시수) 운영 보조
 - 사업 주관기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교육청
 - 사업예산

(명,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계	
배치목표	825	1,000	1,300	1,800	2,200		
사 업 예 산	문화부	7,490	9,030	14,688	20,834	26,173	78,215
	교육청	-	8,830	14,188	20,234	25,473	68,725
	합 계	7,490	17,860	28,876	41,068	51,646	146,940

※ 인건비는 문화부('08: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 '09~'12: 국민체육진흥기금) :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5:5, 연수비는 문화부 부담

※ '08년 소요예산 : 17,860백만원(문화부 9,030백만원, 시·도교육청 8,830백만원)

- 인건비 17,660백만원(1,766천원×10개월×1천명), 연수비등 기타 200백만원

* 인건비 1,766천원/월 : 수당(1,520천원), 사용자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246천원)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주요 업무계획

참고자료 2

2009년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운영계획 및 명단

□ 포럼 운영 목표

1.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 실행 전략, 전국(소년)체전 등 학원스포츠 제도 개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인권 관점에 기초한 스포츠 정책,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 스포츠, 아동·청소년, 여성계 등 관계 전문가 및 학부모, 지도자 등 현장 관계자들의 자문 및 의사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현장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시민 참여형 정책 대안 모색
3. 당면한 스포츠 인권 현안에 대한 공적 토론 및 대안 도출(인권침해 관행에 대한 예방적 대응)
4. ‘인권에 기초한 선진형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 2009년 정례포럼 추진 일정 및 의제

○ 1차 정례포럼

- 일 시 : 2009. 2. 24.(화) 14:00~17:3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 제 :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정책 실행 회의

○ 2차 정례포럼

- 일 시 : 2009. 4. 28.(화)
- 주 제 : 학원스포츠 정책의 인권적 전환 방안—전국소년체전을 중심으로

○ 3차 정례포럼

- 일 시 : 2009. 8. 25(화)
- 주 제 :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및 해외 선진 정책 동향

○ 4차 정례포럼

- 일 시 : 2009. 11. 3(화)
- 주 제 : ‘스포츠와 인권’ 안내서 발간 기념 세미나

※ 일정 및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책포럼 위원 명단(2009.3.24.현재)

성명	소속	비고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서울대 교수	공동대표
방 열	전경원대 사회체육대학원장, 전국가대표 농구감독	공동대표
강신욱	한국스포츠사회학회회장(단국대),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공동대표
류태호	고려대 체육학과 교수	공동운영위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운영위원장
강신우	MBC 축구해설위원	
고은하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경수	공릉중 체육교사(축구감독)	
김대식	잠신중 야구부 학부모	
김미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	
김상범	중앙대 체육과학대학 교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영미	서원대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김영우	수원여고 체육교사(테니스감독)	
나영일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로리주희	쭈마네 부대표	
박진식	전국체육교사모임 대표	
박현이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	
변혜정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선주형	수원농생명과학고 체육교사(씨름감독)	
손천택	한국스포츠교육학회회장, 인천대 체육학과 교수	
신기숙	호남해바라기센터 소장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	
안재학	잠신중 체육교사(야구부장)	
양해경	용인성폭력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회장	
유형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총괄부장	
윤성환	공릉중 축구부 학부모	
이병호	서울체고 교사, 전국체육교사모임 사무국장	

성명	소속	비고
이성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옥희	(사)탁틴내일 상임대표	
이용식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	
이유정	인하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이운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은철	(주)실리콘밸리테크 대표이사, 바르셀로나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이정래	경북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필주	공릉중 축구부 학부모	
임동수	방이중 양궁부 학부모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전국가대표 배구선수	
정운수	문화·스포츠 평론가,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	
정희준	동아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허정훈	중앙대 체육과학대학 교수	
허현미	경인여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 인 쇄 | 2009년 3월

| 발 행 | 2009년 3월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28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